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균형건설국의 일부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구조정

- 국 명칭변경: 행정국 → 안전행정국(안 제7조)

□ 분장사무 조정 등

- 안전행정국 사무 신설 (안 제7조)
 -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 균형건설국 사무 일부 조정 (안 제12조)
 - 재난안전관리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
(재난관리 → 자연재난관리)

□ 그 밖의 개정사항

- 다른 조례 개정 : 국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일괄 개정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새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위하여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균형건설국의 일부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사무에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균형건설국 사무 중 재난안전관리 총괄 업무 이관에 따라 재난관리를 자연재난관리로 변경하는 것 등과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국 명칭변경에 따라 타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안전총괄과를 균형건설국이나 소방본부에 두지 않고 안전행정국에 두어야 하는 이유

와 민생사법경찰팀을 감사관실에 두지 않고 안전총괄과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